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42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423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합5052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18. 1. 18.

판결 선고 2018. 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합5052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70,533,2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533,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원고 청구취지 기재 2012. 5. 13.은 오기이다) 접수 제99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접수 제78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20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4행 "2014. 12. 10."을 "2014. 12. 19."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533,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C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태양이 비정상적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2016.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정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였던 기술보증기금은 2012.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부도사고통지서를 접수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8. 17.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에 2012. 6. 28. D의 부도사고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 시 C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에 따라 C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2012. 8. 17.경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자이며, 이 사건 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위 2012. 8. 1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인 1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보전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주관적 인식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인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정당하다(다만 채권양도인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그 단절을 인정하거나 승계를 부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제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③ 만약 채권양수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통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장기간 지속을 방지하려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반한다.

(다) 이 사건에서의 채권양도 경위, 채권양도의 근거인 처분문서의 구체적 기재사항 등을 종합하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예외적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초의 채권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정당하다.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7, 4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2. 6. 28.경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기술보증기금에게 D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8. 1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156)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연대보증 시 C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8,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2012. 8. 17.경까지 C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2012. 8. 17.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심과 당심에서 수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2018. 1. 17. 이 법원에 중소기업은행이 C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7. 12. 27. 이 법원에 중소기업은행이 C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도 조회된 내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에 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2018. 1. 17. 신청한 사실조회의 채택에 관하여 이의하고 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중소기업은행이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유형이므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

① C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내역, 채무보증내역,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내역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등이다. 그리고 위 동의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이다. 위 동의 내역 및 뒤에서 보는 별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C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이 C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C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동의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C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실적 및 체납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정보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중소기업은행 측(IBK신용정보 주식회사)은 2012. 6. 26. C에 대한 일반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약 중소기업은행 측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 측은 C 소유 및 C이

전입하였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2012. 6. 26.경까지 중소기업은행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2012. 8. 1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B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9. 19.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임에도 C과 피고 B가 작출한 외관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있었던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A 사이에 있었던 법률행위와 2015년까지의 각종 간접사실까지 확인하여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2. 8. 17.경 C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다. 설령 기술보증기금이 2012. 8.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까지 2012. 8.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최초 채권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의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4행부터 제5행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671,231,862원(미화 1,462,785달러, 원 미만 버림)"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671,231,862원[미화 1,462,785달러(= 2011. 1. 17.자 대출채무 미화 84,550달러 + 2011. 1. 20.자 대출채무 미화 64,260달러 + 2011. 1. 26.자 대출채무 미화 468,780달러 + 2011. 3. 28.자 대출채무 미화 66,500달러 + 2011. 4. 13.자 대출채무 미화 110,000달러 + 2011. 4. 20.자 대출채무 미화 110,000달러 + 2011. 4. 26.자 대출채무 미화 290,463달러 + 2011. 5. 30.자 대출채무 미화 36,864달러 + 2011. 9. 5.자 대출채무 미화 101,000달러 + 2011. 9. 16.자 대출채무 35,630달러 + 2011. 9. 28.자 대출채무 94,738달러),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 제10쪽 제20행부터 제11쪽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2012. 3. 26. 50,000,000원, 2012. 4. 5. 140,000,000원, 2012. 4. 12.

200,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피고 A 명의의 계좌에서 2015. 3. 26.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4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갑 제5, 6, 7, 9, 10, 11, 12, 13, 14, 30, 33호증, 제1심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도 피고 B는 C의 배우자인 M이 2014. 1. 7.경 경락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속초시 P 대 730m²)에 2012. 4. 20.경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M이 2012. 4. 13. 근저당권을 취득한 부동산(안성시 Q 대 584m²)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C의 부모인 R, S가 소유하는 부동산(서울 서초구 T아파트 101동 802호) 중 S의 지분에 관하여 2012. 3. 20.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C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서로 잘 알면서 금전거래 등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는 C에게 2012. 3. 23.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2.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2. 11. 26. C을 상대로 40,000,000원 및 201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8461). 위 법원은 2012. 12. 6. 위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3. 1. 4. 확정되었다. 만약 피고 B가 2012. 3. 23.경 C에게 실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라면, 2012. 3.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4,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형태로 정산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C과 피고 A은 사촌인 친족인 사실, 피고 A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 이하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의 상품명은 C의 어머니인 "S"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에 M으로부터 2014. 5. 2.부터 2014. 11. 7.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49,550,000원, S로부터 5회에 걸쳐 6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에서 C, M과 관련된 각종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는 C 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추정된다.

피고 A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 이하 '피고 A 명의 제2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에 C 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2014. 10. 30. 210,790,320원이 입금된 사실, C이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2015. 1. 30. 및 2015. 2. 17. 각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A 명의 제2 신한은행 계좌에서 C, M과 관련된 각종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명의 제2 신한은행 계좌 역시 C 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추정된다.

④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855,000,000원 중 계약금 5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8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6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0원은 2015. 3. 26.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날 주식회사 O로부터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로 14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계좌번호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40,000,000원이 이체된 피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는 C 측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고 A 명의 제1 신한은행 계좌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피고 B에게 2015. 3. 26. 1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C 측으로 추정함이 정당하다. 또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7. 30. M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로 770,680원이 이체된 사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이 아닌 C 측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양시훈

판사박옥희

별지